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34
----------	-------

발의연월일 : 2026. 8. 24.

발 의 자 : 황운하 · 정춘생 · 차규근
이해민 · 강경숙 · 김준형
신장식 · 서왕진 · 김선민
김재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근로감독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부여하면서도,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서류 제출, 심문·신문 등 수사를 검사와 선원근로감독관이 함께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선원근로감독관이 관련 수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 127조).

법률 제 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7조제2항 본문 중 “오로지 검사(檢事)와”를 “오로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7조(사법경찰권) ① (생 략)	제127조(사법경찰권)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선원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제출, 심문이나 신문(訊 問) 등 수사는 <u>오로지 검사(檢 事)와 선원근로감독관이 수행한</u> 다. 다만, 선원근로감독관의 직 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u>오로지</u> ----- ----- --. ----- ----- -----.